

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617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5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최근 공유재산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용료·대부료 조정 및 감면 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에 대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(안 제4조 제1항)
- 현행 조례 상의 ‘대장가액’에 대한 용어가 애매모호하므로 영 제7조제7항에서 정의한 ‘기준가격’으로 정비 (안 제4조 제3항 제3호)
- 공유재산심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영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사항 등에 한해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4조 제3항 제5호 및 제6호)
- 상위법령에서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중 ‘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’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 (안 제25조 제1항 및 제2항)
- 매각대금 결정과 관련, 관련 법률인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서 “감정평가업자”를 “감정평가법인등”으로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함. (안 제28조 제1항 및 제4항, 안 제63조)
-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과 관련,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(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 제3항) 정비 및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. (안 제30조 제1항·제3항·제4항)
- 대부료 및 사용료의 조정과 관련, 상위법령(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)이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함. (안 제32조)

- 개정 조례안 : 붙임1
-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-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-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-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-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: 붙임4
-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 - 입법예고 : 2021. 3. 18. ~ 2021. 4. 7. (20일간)
- 기타 참고사항
 - 현행조례 : 붙임5
 - 관련문서 및 방침결정문 : 붙임6

< 붙임 1 >

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회” 를 “법 제16조에 따른 안산시 공유재산심의회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

3.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

제4조제3항제3호 중 “대장가액” 을 “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” 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영 제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

6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

제25조의 제목 “(수익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)” 를 “(수익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해당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「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농특산물

2.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

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행정재산은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사용하려는 청사(廳舍)인 공유재산을 말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이 평가한 매각대금” 을 “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(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평가한 평가금액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감정평가업자” 를 “감정평가법인등” 으로 한다.

제30조의 제목 “(대부료 감면)” 을 “(대부료 등 감면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3조제9항” 을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의2제3항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5조” 를 “제25조제1항 각 호” 로, “대부료는” 을 “대부료 등은” 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그 밖에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 제2항에 따른다.

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2조(대부료 등의 조정)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경우,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을 감액조정할 수 있다.

제63조 후단 중 “평가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업자” 를 “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회계과
입 안	실·과장 직위·성명	회계과장 이 영 옥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재산관리팀장 조 용 호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신 길 섭 (행정 2175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공유재산심의회) ① <u>법 제16조제2항 제4호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② <u>삭제</u></p> <p>③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삭제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<u>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·처분</u></p> <p>4. <u>삭제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제25조(수익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) <u>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일반 재산은 시장이 시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</u></p>	<p>제4조(공유재산심의회) ① <u>법 제16조에 따른 안산시 공유재산심의회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<u>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</u></p> <p>4.·5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</u> --</p> <p>--</p> <p>5. <u>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대하여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</u></p> <p>6. <u>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</u></p> <p>제25조(수익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등) ① <u>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</u></p>

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·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28조(채광물 등의 매각대금) ① 제26조 제1항에 따라 광업·채석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대부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 등의 매각대금은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계산해서 결정한다.

② 삭 제

③ (생 략)

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,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지조서,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30조(대부료 감면) ①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3조제9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,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이바지할 수 있는 해당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「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농특산물

2.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

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행정재산은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사용하려는 청사(廳舍)인 공유재산을 말한다.

제28조(채광물 등의 매각대금) ① -----

-----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(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평가한 평가금액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 감정평가법인등-----

-----.

제30조(대부료 등 감면) ①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3조의2제3항-----

-----.

1. ~ 3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100분의 30을 감면 할 수 있다.

<신설>

제32조(대부료 등의 조정)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 비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.

제63조(공유토지의 분필) 시장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, 이를 위한 평가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25조제1항 각 호----- 대부료 등은 -----.

④ 그 밖에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다.

제32조(대부료 등의 조정)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경우,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을 감액조정할 수 있다.

제63조(공유토지의 분필) -----

-----.

-----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-----
-----.